

2023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주관기관 모집공고

사업 신청·접수 FAQ

2022. 12.

「2023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주관기관 모집공고」 신청과 관련한 공통 및 주요 질의에 대한 FAQ이며, 이외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모집공고에 기재된 유선 또는 K-Startup 상담하기 등을 통해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신청 개요 및 문의처]

01 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2023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주관기관 모집공고」 신청은 K-Startup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불가), 사업 신청 완료 여부 및 과제번호 등 신청 여부 확인은 K-Startup 누리집 → '사업 신청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신청 경로 : ① K-스타트업 접속 온라인 사업 신청 검색창에 'k-startup.go.kr' 또는 '창업지원포털' 검색
 ② 사업신청 K-Startup 로그인 사업공고 모집 중 '주관기관' 검색
 ③ 사업 신청 확인 K-Startup 로그인 사업 신청관리 사업 신청 사업 신청내역조회

02 사업은 신청은 담당자 명의로 하면 되나요?

☞ 사업 신청 시에는 기관의 총괄 책임자의 ID를 통해서만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대리 접수 불가), 그 이외 전담 인력은 온라인 사업 세부 신청 단계(담당자 입력)에서 전체 전담 인력에 대한 정보를 필수 기입해야 합니다.

* 기존에 K-Startup 회원가입을 완료한 경우, 소속기관 확인 필수. 소속기관의 현재와 상이한 경우, 회원정보 변경을 통해 현 소속기관으로 변경 후 입력 요망

** 회원 가입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입이 필요한 인력은 사전 회원가입 진행

03 회원가입 시, 기업(기관)에 대한 실명 인증은 어떻게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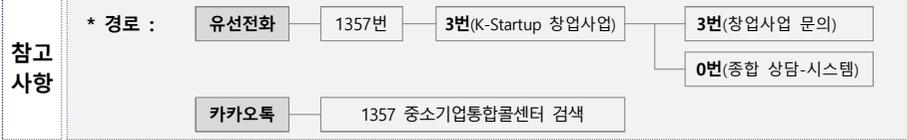
☞ 사업 신청기관은 SCI기업실명인증 또는 공동인증서인증 중 1개의 방법을 택 하여 반드시 인증해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SCI 기업 실명인증 방법 >

① 사이렌24(www.siren24.com) 접속 후, 회원가입
 * (기업 실명등록 안내) 고객센터(상단 우측) - 실명등록센터(좌측) - '기업 실명등록 안내' 페이지 참조
 ②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기업정보 업데이트 요청서) 각 1부 준비
 * (기업정보 업데이트 요청서) 고객센터 - 실명등록센터 - 기업 실명등록 안내 페이지의 '기업정보업데이트 요청서' 배너를 선택하여 다운로드 가능
 ③ 02-3279-6600으로 FAX 발송
 * (등록센터 운영시간) 09:00~18:00(월~금), 토·일·공휴일 휴무
 ** (등록센터 문의번호) ☎ 1577-1006 (서울신용평가정보 고객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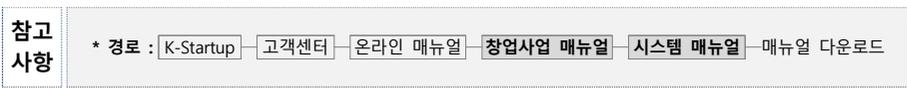
04 사업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답변 ☞ 시스템과 관련한 문의는 ☎(국번없이)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해주시기 바라며, 요건 등에 대한 문의는 공고문에 기재된 담당자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5 신청과 관련한 시스템 매뉴얼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 K-스타트업 접속 후 고객센터에 있는 온라인 매뉴얼 탭에서 창업사업통합 정보관리시스템(PMS) 이용 매뉴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관은 사전에 PMS 매뉴얼 숙지 권장(사업 신청 및 시스템 이용 등)



06 K-스타트업에서 상담하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 K-스타트업 접속 후, 상담하기 게시판을 통해 신청기관이 직접 글을 작성 하면, 해당 질의 사항에 대해 사업담당자가 확인 후 답변을 드립니다,
 * 신청기관은 사전에 PMS 매뉴얼 숙지 권장(사업 신청 및 시스템 이용 등)

07 자주하는 질문(FAQ)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답변 ☞ K-스타트업 접속 후, 상담하기 게시판을 통해 신청기관이 직접 글을 작성 하면, 해당 질의 사항에 대해 사업담당자가 확인 후 답변을 드립니다,
 * 신청기관은 사전에 PMS 매뉴얼 숙지 권장(사업 신청 및 시스템 이용 등)
 ☞ 공고문에 기재된 전자메일 및 사업담당자 연락처 등을 통해서 접수된 질의 사항에 대해 사업담당자가 확인 후 답변드리며, 자주하는질문(FAQ)을 정리 하여 공고페이지에 업로드 예정입니다.

[주관기관 공통 질의·답변]

1. 신청 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01 **공고문상 신청 자격이 대학, 공공기관, 민간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개 기관에서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가능합니다. 현재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대학 등)을 포함하여, '23년도 창업중심대학, 예비-초기-도약 패키지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신규 주관기관으로 지원 예정인 기관에서도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02 **OO대학교입니다. 대학(본교)과 소속 산학협력단 또는 분교(캠퍼스 등)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대학(본교)과 소속 산학협력단은 서로 다른 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산학협력단은 대학에 소속되기 때문에 같은 사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3 **OO대학교 기술지주회사입니다. 대학(본교) 또는 소속 산학협력단과 동일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불가합니다. 대학(본교), 산학협력단, 기술지주 등은 그 성격과 유형이 서로 다르지만, 대학(본교)의 실질적인 소속이라는 점에서 같은 기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관 등이 동일 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나, 서로 다른 사업이라면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04 **OO대학교 본교(A캠퍼스)입니다. 신청은 A캠퍼스로 신청하고, 전담조직은 B캠퍼스에 위치해도 되나요?**

답변 ☞ 불가합니다. 캠퍼스에서 동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캠퍼스의 창업지원기능, 기존 창업지원조직 유무가 확인되어야 하며, 동 사업 선정 시 전담조직은 해당 캠퍼스 내 필수 위치하고, 회계처리 등 운영사항 전반이 해당 캠퍼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05 대학 내 산학협력단에서 창업지원사업 사업비를 운영·관리 중입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 신청·협약 주체(신청기관)와 회계처리 주체(산학협력단 등)가 상이할 경우, 사업 신청 시 반드시 회계처리 주체인 산학협력단 등을 '참여기관'으로 필수 등록해야 합니다.
* (예시) OO대학교의 회계처리를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경우, 'OO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참여기관으로 기재

06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주관기관 모집공고에서는 권역별 T/O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권역별 구분이 없나요?

답변 ☞ 본 사업 주관기관 모집공고는 권역(지역)별 구분이 없습니다.

□ **참여·협력기관**

01 참여기관과 협력기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 **참여기관**은 대학(본교 또는 분교)에 소속된 기관이 사업비 집행·관리를 위해 신청기관의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사업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이며, **협력기관**은 동 사업운영을 위해 신청기관과 협력하는 동일 권역 내 타 대학, 창업지원기관 등을 의미합니다.

02 참여기관과 협력기관을 중복하여 구성할 수 있나요?

답변 ☞ 불가합니다. '참여기관'은 대학의 회계처리 주체에 따른 산학협력단 등으로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기관과 별도로 참여기관이 동일 대학의 협력기관 또는 타 대학의 협력 기관 등으로 중복하여 구성 불가합니다.

03 협력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변 ☞ 협력기관은 '창업자 발굴', '자금 및 투자 연계' 뿐만 아니라 보유 인프라 또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신청기관과 창업프로그램을 협업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대응 자금 조성**

01 대응 자금은 필수로 조성해야 하나요?

답변 ☞ 아닙니다. 대응 자금 조성은 필수사항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단, 대응자금을 1억원 이상 조성한 경우,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합니다.

참고 사항

* (참고) (붙임1) 2023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양식

구분	세부내용
가점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문 상 대응자금 조성 관련 가점 항목 확인 후 해당 시 체크 * [참고] 대응자금(현금) 조성 규모에 따라 최대 5점 부여

02 지자체 예산을 통해 대응 자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예산이 확정되어야 가능한데 언제까지 마련해야 하나요?

답변 ☞ 대응 자금은 사업 신청 시에는 공문, 확약서 등으로 같음하지만, 협약체결 시점부터는 본 사업에서 정한 기한 내에 마련해야 합니다. 기한 등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 민간(VC, 금융기관 등)에서 조달한 대응 자금도 인정 가능한가요? 또한 다수의 기관을 통해 대응 자금을 마련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민간(VC, 금융기관 등)이나 다수의 기관을 통한 대응 자금 마련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응 자금의 경우, 해당 사업에 투입된다는 내용이 공문 또는 확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 (참고) 외부 등으로부터 대응 자금을 조달하여 마련하는 경우, 공문 또는 확약서(별도양식 無)를 제출해야 하며,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투입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

04 컨소시엄 기관(협력 기관)도 정부지원금과 대응 자금 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 불가합니다. 정부지원금 및 대응 자금은 전담 기관과 협약하는 당사자, 즉 해당 주관기관에서만 집행·관리할 수 있습니다.

05 대응자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 대응 자금은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주관기관 운영 등 해당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만약 협약 기간 내 대응 자금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집행 비율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참고) 창업 사업화 통합관리지침 붙임 제1호 [주관기관 제재조항]

제재등급	기 준	제재 및 환수기준
협약해지	○ 주관기관 선정 필수요건(대응자금 확보 등) 불이행 등으로 사업을 지속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사업비 환수 (참여 제한 3년)

06 대응 자금의 조성 여건이 있나요?

답변 ☞ 대응자금을 조성하는 경우, 지자체 및 대학 자체자원 등을 활용하여 예비창업자 발굴·육성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응자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 현물 계상 불가

참고 사항 * (참고) 대응자금은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인건비, 주관기관 운영 등 해당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만약 협약 기간 내 대응 자금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집행 비율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7 신청 접수 시 계획한 대응자금의 규모를 감액할 수 있나요?

답변 ☞ 불가합니다. 당초 계획한 대응 자금의 **총액은 증액만 가능하며, 향후 축소가 불가**합니다.

□ 전담 조직 및 인력

01 기관의 총괄책임자를 전담 조직의 장으로 선임해도 되나요?

답변 ☞ 총괄책임자는 '신청기관을 대표하는 자'를 뜻하며, 대학의 경우 총장,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민간의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
총괄책임자를 전담 조직의 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업에 직접 참여해야 하는 만큼 단순 기관 대표자(총괄책임자)를 사업 전담 조직의 장으로 선임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 전담 조직의 장 : 주관기관의 임명을 받은 자 (또는 주관기관의 장)로서 창업(또는 창업 관련 분야) 경력을 보유하고 사업 기획·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

02 전담 조직의 장은 사업에 100% 참여해야만 하나요?

답변 ☞ 전담 조직의 장은 사업에 전부 또는 일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주관기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담 조직의 장도 사업에 100% 참여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03 전담 조직 요건 등에 따라 전담 인력을 신규 채용하고자 합니다. 인력에 대한 채용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답변 ☞ 전담 인력 등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이내에 채용 등을 통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채용 기한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담 조직 및 인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 (참고) 전담조직 구성(안)
- 전담 조직의 장 1명 + 전담 인력 3명 이상 (경력 3년 이상 1명 포함)

04 전담 인력의 창업지원 경력 산정기준이 있나요?

답변 ☞ 전담인력의 창업지원 경력은 ① 정부 또는 지자체 창업 지원사업 업무를 실제 수행하거나, ② 기술 기반창업 경험 등을 보유한 경우 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인사, 회계 등 단순 경영지원 업무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 (참고) 전담 인력 경력 산정기준(안)

구분	경력 인정	경력 불인정
창업지원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지자체 출연·보조 창업 지원사업 민간기관의 창업지원 업무 창업교육·연구, 창업자 멘토링 제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재무·경영 등 행정업무 R&D, 중소기업 등 지원업무
창업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기반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 창업 (음식점 등)

05 타 사업에 복수로 신청하는 경우, 전담 조직을 동일 인력으로 구성해도 되나요?

답변 ☞ 2개 이상의 사업에 동시 신청하는 경우, 전담 조직의 장 및 겸직 인력은 동일 구성이 가능하나, 전담 인력은 동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복수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는 경우, 전담 인력은 사업별 요건 등에 따라 정해진 기한 이내에 구성을 완료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6 겸직 인력을 구성해도 되나요? 그리고 겸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 주관기관의 창업지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예산집행·관리 인력 등 지원인력을 제외하고는 겸직 인력 구성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직인력에 대한 급여성 명목의 인건비 지급은 **사업비로 집행이 불가**하며, 특정 업무(회계 등)에 대한 수당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 겸직인력 수당은 주관기관의 내부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 가능

□ **행정실(사무공간)**

01 전담조직 행정실(사무공간) 구성에 대한 세부 조건이 있나요?

답변 ☞ 전담조직 행정실 구축은 전담조직의 장과 전담인력이 동일한 사무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불가피할 경우 동일 건물 내에 한하여 구축 가능합니다.
* 행정실 구축 시 전용면적 기준 전용공간의 합이 33㎡, 약 10평 이상이어야 함
** 일부가 분리되어 별도 부서 및 센터(타지역 포함)에서 근무 불가

02 사업 선정 후, 리모델링을 통해 별도의 사무실을 구축할 수 있나요?

답변 ☞ 동 사업 예산은 리모델링 비용으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2. 사업계획서 작성

01 사업계획서 분량의 제한이 있나요?

답변 ☞ 사업계획서 분량 제한은 없습니다. 단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사업계획서 등을 업로드할 수 있는 용량이 제한됨에 따라 (300MB) 최대 업로드 용량 이내에서 작성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02 사업기간이 총 2년(1년+1년)인데, 사업계획서는 몇 년 단위로 작성 해야 하나요?

답변 ☞ 사업비 집행, 창업지원 프로그램 계획, 대응자금 활용(해당 시) 등의 계획 수립은 당해연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비전 등은 사업 기간(총 2년) 전체에 대해 연차별 계획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03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창업지원 실적 등 증빙은 어떻게 제출 하나요?

답변 ☞ 창업지원 실적 등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은 사업 신청 시 증빙서류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 내 실적 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실적 등이 불인정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04 대학(본교)를 통해 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창업지원 실적은 분교, 캠퍼스의 창업지원 실적을 포함해서 작성 가능한가요?

답변 ☞ 불가합니다. 지원실적 등은 신청기관(협약주체) 실적에 한 해 인정됩니다.

05 사업계획서 내 사업비 구성(조성)은 어떻게 작성 하나요?

답변 ☞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각 사업비 구성항목에 따른 구성 비율, 세부 집행조건 등은 모집 공고문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계상기준이 있나요?

답변 ☞ 전담 인력의 채용형태(정규직, 무기계약직 등)에 따라 세목이 상이하므로,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 운영 및 기타사항

01	사업 운영 기간이 2년입니다. 선정되는 기관은 <u>2년의 운영 기간을 보장받는 것인가요?</u>
답변	☞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주관기관 전담인력 업무 연속성 제공 및 전문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23년 신규 선정 주관기관은 총 2년(1년+1년)동안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다만, 부실한 사업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중간평가 등을 실시하여 사업수행이 미흡한 주관기관의 경우, 협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02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u>별도 불이익 등 조치가 있나요?</u>
답변	☞ 신청 당시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계획과 실제 운영이 상당 부분 상이하거나 미흡한 주관기관에 대해서는 최종 성과평가 등을 통해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03	제출기한 내 실적 증빙자료 구비가 어려운데 <u>사업계획서에 실적으로 작성해도 되나요?</u>
답변	☞ 불가합니다. 모든 실적은 별도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모든 내용은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명시된 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감점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질의·답변]

01	생애최초 예비창업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 본 사업은 현재까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이력이 전혀 없는 만 29세 이하의 청년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기준과는 차이가 있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3년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추후 예비창업자 모집공고(예정)와 전담기관 안내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 '23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주관기관 모집공고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확인
02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주관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변	☞ 주관기관은 생애최초로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 선정평가, 사업비 관리, 창업사업화 지원·예비창업자 발굴·후속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점검, 추적관리, 기타 행정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03	예비창업자 발굴 프로그램 운영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이 있나요?
답변	☞ 각 주관기관에서는 기관의 보유 인프라, 역량, 경험 등을 활용하여 공고 시점 뿐만 아니라 연중 상시로 유망 예비창업자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프로그램은 선정된 주관기관에게 별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4	멘토 구성 및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답변	☞ 멘토-예비창업자 매칭, 관리 방안 등을 사업계획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예비창업자의 창업아이템 및 보유기술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관기관 자체적으로 '기술멘토' Pool 구축 및 멘토링을 통한 예비창업자 기술역량강화에 대한 계획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진행 방법은 선정된 주관기관에게 별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 창업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답변

☞ 각 주관기관에서는 예비창업자의 창업·경영·기술 분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관에서는 이론 교육을 포함하여 예비창업자의 창업, 경영, 기술 등 역량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 (붙임1) 2023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양식 - V. 창업프로그램 운영계획 - <창업 프로그램 작성 가이드 > 참고

06 멘토링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답변

☞ 각 주관기관에서는 AC 등 창업·경영전문가, 선배 청년창업자 등 기술전문가와 예비창업자를 1:1 매칭하여 예비창업자의 창업·경영·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멘토 제도 등 운영하여야 합니다.

* 예비창업자 1명당 창업·경영 멘토 1명, 기술 멘토 1명 총 2명 매칭 필수

참고 사항

* (붙임1) 2023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양식 - V. 창업프로그램 운영계획 - <창업 프로그램 작성 가이드 > 참고

07 네트워킹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답변

☞ 각 주관기관에서는 예비창업자의 수요에 맞춰 선배 청년 창업자의 경험·노하우 전수와 예비창업자 간 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등을 위해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프로그램(교육, 멘토링)과는 별도로, 예비창업자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행사 등 창업프로그램을 기획하시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